

신한마음편한적격TDF2050증권자투자신탁[주식혼합-재간접형]

(SH Peace of Mind Qualified TDF 2050 Security Feeder Investment Trust [Equity Balanced-FoF])

한국금융투자협회 펀드코드(운용펀드기준) : K55210CO3562

제1장 총칙

제1조 (신탁계약의 목적)

이 신탁계약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이 정하는 바에 따라 투자신탁의 설정, 투자신탁재산의 운용 및 관리를 함에 있어 집합투자업자인 **신한자산운용(주)**와 신탁업자인 **주식회사 우리은행**이 수행하여야 할 업무 등 필요한 사항과 수익자의 권리 및 의무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이 신탁계약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각 호에서 정하지 아니하는 용어에 관하여는 관련 법령과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1. "집합투자"라 함은 2인 이상의 투자자(또는 법 제6조제6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부터 모은 금전 등을 투자자로부터 일상적인 운용지시를 받지 아니하면서 재산적 가치가 있는 투자대상자산을 취득/처분, 그 밖의 방법으로 운용하고 그 결과를 투자자에게 배분하여 귀속시키는 것을 말한다.
2. "수익자"라 함은 이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을 보유하는 자를 말한다.
3. "영업일"이라 함은 **판매회사의 영업일**을 말한다.
4. "투자신탁"이라 함은 집합투자업자인 위탁자가 신탁업자에게 신탁한 재산을 신탁업자로 하여금 그 집합투자업자의 지시에 따라 투자·운용하게 하는 신탁 형태의 집합투자기구를 말한다.
5. "증권형"라 함은 투자신탁재산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법 제229조 제1호의 증권에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를 말한다.
6. "개방형"이라 함은 환매가 가능한 집합투자기구를 말한다.
7. "추가형"이라 함은 추가로 자금 납입이 가능한 집합투자기구를 말한다.
8. "종류형"이라 함은 법 제231조 규정에 의한 판매보수의 차이로 인하여 기준가격이 다르거나 판매수수료가 다른 여러 종류의 집합투자증권을 발행하는 집합투자기구를 말한다.
9. "모자형"이라 함은 법 제233조 규정에 의한 다른 집합투자기구(모집합투자기구)가 발행하는 집합투자증권을 자집합투자기구가 취득하는 구조의 집합투자기구를 말한다.

제3조 (집합투자기구의 명칭 및 종류)

- ① 이 투자신탁은 증권투자신탁으로서, 투자신탁의 명칭은 "**신한마음편한적격 TDF2050 증권자투자신탁[주식혼합-재간접형]**"이라 한다.
- ② 이 투자신탁은 다음 각 호의 형태를 갖는 집합투자기구로 한다.
 1. 투자신탁
 2. 증권형(혼합주식-재간접형)
 3. 개방형
 4. 추가형
 5. 종류형

6. 모자형

③ 이 투자신탁은 종류형 집합투자기구로 종류는 다음과 같다.

종류	투자자격	(선취·후취) 판매수수료 부과여부
종류 A1 수익증권	제한없음	선취 판매수수료 있음 (제 38 조 참조)
종류 A-e 수익증권	판매회사 등이 제공하는 전자매체(On-line)를 통한 수익증권 취득자	선취 판매수수료 있음 (제 38 조 참조)
종류 A-g 수익증권	투자자문업자로부터 투자자문을 받고 그 결과에 따라 펀드 매수를 요청하는 등 금융기관등으로부터 별도의 투자권유 없이 펀드를 가입하고자 하는 투자자	선취 판매수수료 있음 (제 38 조 참조)
종류 C1 수익증권	제한없음	해당사항 없음
종류 C-e 수익증권	판매회사 등이 제공하는 전자매체(On-line)를 통한 수익증권 취득자	해당사항 없음
종류 C-g 수익증권	투자자문업자로부터 투자자문을 받고 그 결과에 따라 펀드 매수를 요청하는 등 금융기관등으로부터 별도의 투자권유 없이 펀드를 가입하고자 하는 투자자	해당사항 없음
종류 C-i 수익증권	- 법에서 정하는 집합투자기구 - 법 시행령 제 10 조제 2 항 각 호의 금융기관 및 금융투자업규정 제 1-4 조에서 정하는 기관투자자 또는 국가 재정법에 따른 기금 및 그 기금을 관리·운용하는 법인(외국법령상 이에 준하는 자를 포함)	해당사항 없음
종류 C-p 수익증권	소득세법 제 20 조의 3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 40 조의 2 에 따른 연금저축계좌를 통하여 가입한 자	해당사항 없음
종류 C-r 수익증권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상의 적립금 및 개인퇴직계좌 자금(사전지정운용제도 (디폴트 옵션)를 통하여 가입한 자는 제외)	해당사항 없음
종류 C-s 수익증권	이 투자신탁의 안정적 운용을 위하여 가입하는 집합투자업자, 집합투자업자의 계열금융회사	해당사항 없음
종류 C-w 수익증권	- 판매회사의 일임형 종합자산관리(Wrap)계좌를 보유한 자 - 법 제 8 조제 7 항에 의한 신탁업자 - 이 투자신탁의 집합투자업자가 판매하는 수익증권에 가입하고자 하는 법인 투자자	해당사항 없음

종류 S 수익증권	자산운용사의 공동판매채널로서의 역할 수행을 위해 모든 공모 S 관련 클래스를 취급하고, 객관적 지표를 기준으로 상품을 노출 및 배열하는 온라인판매시스템을 통하여 가입한 투자자	후취 판매수수료 있음 (제 38 조 참조)
종류 S-P 수익증권	자산운용사의 공동판매채널로서의 역할 수행을 위해 모든 공모 S 관련 클래스를 취급하고, 객관적 지표를 기준으로 상품을 노출 및 배열하는 온라인판매시스템을 통하여 가입한 투자자이며, 소득세법 제 20 조의 3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 40 조의 2 에 따른 연금저축계좌를 통하여 가입한 자	해당사항 없음
종류 C-pe 수익증권	소득세법 제 20 조의 3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 40 조의 2 에 따른 연금저축계좌를 통하여 가입한 자로서 판매회사 등이 제공하는 전자매체(On-line)를 통한 수익증권 취득자	해당사항 없음
종류 C-re 수익증권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상의 적립금 및 개인퇴직계좌 자금으로서 판매회사 등이 제공하는 전자매체(On-line)를 통한 수익증권 취득자(사전지정운용제도 (디폴트옵션)를 통하여 가입한 자는 제외)	해당사항 없음
종류 S-R 수익증권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상의 개인퇴직자금으로서 자산운용사의 공동판매채널로서의 역할 수행을 위해 모든 공모 S 관련 클래스를 취급하고, 객관적 지표를 기준으로 상품을 노출 및 배열하는 온라인판매시스템을 통하여 가입한 투자자(사전지정운용제도(디폴트옵션)를 통하여 가입한 자는 제외)	해당사항 없음
종류 C-O 수익증권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상의 적립금 및 개인퇴직계좌 자금으로서 사전지정운용 제도(디폴트옵션)를 통하여 가입한 자	해당사항 없음
종류 C-r2 수익증권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상의 적립금 중 확정급여형(DB) 퇴직연금 적립금(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상의 사전지정운용제도(디폴트 옵션)를 통하여 가입한 자는 제외)	해당사항 없음

④ 이 신탁계약의 시행일 현재, 이 투자신탁의 모투자신탁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신한마음편한적격TDF2050증권모투자신탁[주식혼합-재간접형]

제4조 (집합투자업자 및 신탁업자의 업무)

①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의 설정·해지, 투자신탁재산의 운용·운용지시업무를 수행한다.

- ② 이 투자신탁 재산으로 보유하고 있는 모투자신탁 수익증권의 의결권을 행사하는 경우 이 투자신탁의 수익자가 의결권을 행사한 내용에 비례하여 집합투자업자가 행사한다.
- ③ 신탁업자는 투자신탁재산을 보관 및 관리하는 자로서 집합투자업자의 투자신탁재산 운용지시에 따른 자산의 취득 및 처분의 이행, 해지대금 및 이익금의 지급, 집합투자업자의 투자신탁재산 운용지시에 대한 감시업무, 투자신탁 재산의 평가의 공정성 및 기준가격산정의 적정성 여부 등의 확인 업무를 수행한다.
- ④ 투자신탁재산의 운용지시에 관한 방법 및 절차, 각종 세금 및 공과금의 공제업무 기타 신탁업자의 수탁업무처리에 관한 사항 등으로서 이 신탁계약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관련법령과 규정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집합투자업자와 신탁업자 사이에 별도로 정할 수 있다. 다만, 이 신탁계약과 위 약정 사이에 상충하는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이 신탁계약이 우선한다.

제5조 (신탁계약의 효력 및 신탁계약기간)

- ① 이 신탁계약은 각 당사자가 서명날인함으로써 즉시 효력이 발생한다.
- ② 수익자는 이 투자신탁의 집합투자증권을 매입청구한 때로부터 이 신탁계약에서 정한 사항 중 관련 법령 및 규정과 투자설명서 등에서 정한 사항의 범위 내에서 이 신탁계약을 수락한 것으로 본다.
- ③ 이 집합투자기구의 계약기간은 투자신탁의 최초설정일부터 신탁계약의 해지일까지로 한다.

제6조 (신탁원본의 가액 및 수익증권의 총좌수)

이 집합투자기구를 최초로 설정하는 때의 신탁원본의 가액(이하 "신탁원본액"이라 한다)은 1좌당 1원을 기준으로 제28조에서 정한 기준가격 (이하 "기준가격"이라 한다)을 적용하여 공고하며, 설정할 수 있는 수종의 수익증권의 총 좌수는 **10조**좌로 한다.

제7조 (추가신탁)

집합투자업자는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수종의 수익증권의 총좌수의 범위 내에서 추가설정을 할 수 있으며, 추가설정의 규모 및 시기 등은 집합투자업자가 결정하되, 관련 절차는 관련법령 및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8조 (신탁금의 납입)

- ① 집합투자업자는 이 집합투자기구를 최초로 설정하는 때에 제6조의 신탁원본액에 해당하는 투자신탁금을 금전으로 신탁업자에 납입하여야 한다.
- ② 집합투자업자는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이 투자신탁을 추가로 설정하는 때에는 추가투자신탁금을 금전으로 신탁업자에 납입하여야 한다. 이 경우 추가투자신탁금은 추가설정하는 날에 공고되는 당해 종류 수익증권의 기준가격에 추가로 설정하는 당해 종류 수익증권좌수를 곱한 금액을 1,000으로 나눈 금액으로 한다.
-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추가투자신탁금 중 추가로 설정하는 당해 종류 수익증권좌수에 최초 설정시 공고된 당해 종류 수익증권의 기준가격을 곱한 금액을 1,000으로 나눈 금액은 원본액으로, 이익 또는 손실에 상당하는 금액은 수익조정금으로 처리한다.

제2장 수익증권 등

제9조 (수익권의 분할)

- ① 이 투자신탁의 수익권은 수익증권의 종류별로 1좌의 단위로 균등하게 분할하며, 수종의 수익증권으로 발행한다.
- ② 이 투자신탁의 수익자는 투자신탁원본의 상환 및 투자신탁이익의 분배 등에 관하여 수익증권의 종류별로 수익증권의 좌수에 따라 균등한 권리를 가지며, 설정일이 다른 경우에도 그 권리의 내용에는 차이가 없다.

제10조 (수익증권의 발행 및 전자등록)

- ① 집합투자업자는 제6조 및 제7조의 규정에 의한 투자신탁의 최초설정 및 추가설정에 의한 신탁계약에서 정한 신탁원본 전액이 납입된 경우 신탁업자의 확인을 받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명식 수익증권을 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이하 "전자증권법"이라 한다)」에 따른 전자등록의 방법으로 투자신탁의 수익권을 발행하여야 한다.
 1. 종류 A1 수익증권
 2. 종류 A-e 수익증권
 3. 종류 A-g 수익증권
 4. 종류 C1 수익증권
 5. 종류 C-e 수익증권
 6. 종류 C-g 수익증권
 7. 종류 C-i 수익증권
 8. 종류 C-p 수익증권
 9. 종류 C-r 수익증권
 10. 종류 C-s 수익증권
 11. 종류 C-w 수익증권
 12. 종류 S 수익증권
 13. 종류 S-p 수익증권
 14. 종류 C-pe 수익증권
 15. 종류 C-re 수익증권
 16. 종류 S-R 수익증권
 17. 종류 C-O 수익증권
 18. 종류 C-r2 수익증권
- ② 판매회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 전자증권법 제2조제3호가목에 따른 고객계좌부(이하 "수익증권고객계좌부"라 한다)를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1. 고객의 성명 및 주소
 2. 수익증권의 종류 및 수
- ③ 수익증권고객계좌부에 전자등록된 자는 해당 수익증권에 대하여 적법한 권리를 가지는 것으로 추정한다.
- ④ 제1항 각 호의 수익증권 이외의 다른 종류의 수익증권을 추가하거나 수익증권의 종류 변경 또는 특정 종류의 수익증권을 폐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41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11조 (수익증권의 양도)

- ① 수익권을 양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전자증권법 제30조에 따른 계좌간 대체의 전자등록에 의하여야 하며, 수익증권고객계좌부에 전자등록된 자는 해당 수익증권에 대하여 적법한 권리를 가지는 것으로

추정한다.

- ② 수익증권을 질권의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전자증권법 제31조에 따른 질권 설정의 전자등록을 하여야 입질의 효력이 발생한다.
- ③ 수익권의 이전은 집합투자업자가 정하는 절차에 따라 취득한 자가 그 성명과 주소를 수익자명부에 기재하지 아니하면 집합투자업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제12조 (수익자명부)

- ① 집합투자업자는 수익자명부 작성에 관한 업무를 전자증권법 제2조 제6호에 따른 전자등록기관(이하 "전자등록기관"이라 한다)에 위탁하여야 한다.
- ② 집합투자업자는 전자등록기관과 수익자명부 작성 등을 위한 위탁계약을 체결하고, 전자등록기관은 관련법령·신탁계약서·위탁계약서 및 관련규정 등에 따라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 ③ 집합투자업자는 의결권을 행사하거나 이익금등을 받을 자, 기타 수익자 또는 질권자로서 권리를 행사할 자를 정하기 위하여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수익자명부의 기재변경을 정지하거나 일정한 날에 수익자명부에 기재된 수익자 또는 질권자를 그 권리를 행사할 수익자 또는 질권자로 볼 수 있다.
- ④ 집합투자업자는 전항의 기간 또는 일정한 날을 정한 경우 지체없이 이를 전자등록기관에 통지하여야 한다.
- ⑤ 전자등록기관은 제4항의 규정에 따라 통보를 받은 경우 판매회사에 대하여 수익자에 관한 다음 각호의 사항의 통보를 요청할 수 있다.
 - 1. 수익자의 성명, 주소 및 전자우편 주소
 - 2. 수익자가 보유한 수익권의 종류 및 수
- ⑥ 제5항의 규정에 따라 판매회사로부터 통보를 받은 전자등록기관은 그 통보받은 사항과 통보년월일을 기재한 수익자명부를 작성하여야 하며, 집합투자업자가 수익자명부 기재사항의 통보를 요청하는 경우 수익자의 성명과 수익권의 좌수를 통보하여야 한다.
- ⑦ 집합투자업자가 제3항의 날을 정한 경우에는 상법 제354조제4항의 전단을 준용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의한 기준일을 설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1. 부분환매 결정에 의한 정상자산과 환매연기자산으로 분리를 위한 기준일을 설정하는 경우
 - 2. 수익자총회 합병승인에 따른 투자신탁의 합병기준일을 설정하는 경우
 - 3. 투자신탁해지에 따른 상환금지급을 위해 기준일을 설정하는 경우
 - 4. 투자신탁 회계기간종료에 따른 이익분배금 지급을 위해 기준일을 설정하는 경우

제3장 투자신탁재산의 운용

제13조 (자산운용지시 등)

- ①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재산을 운용함에 있어 신탁업자에 대하여 자산의 취득·처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지시를 하여야 하며, 신탁업자는 집합투자업자의 지시에 따라 자산의 취득·매각 등을 실행하여야 한다. 다만,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재산의 효율적 운용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로서 법 시행령 제79조제2항에 정하는 방법으로 투자대상자산을 운용하는 경우 자신의 명의로 직접 투자대상자산의 취득·처분 등을 할 수 있다.
- ② 집합투자업자 또는 신탁업자가 제1항에 따라 투자대상자산의 취득·처분 등을 한 경우 그 투자신탁재산을 한도로 하여 그 이행책임을 부담한다. 다만, 그 집합투자업자가 법 제64조제1항에 따라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③ 집합투자업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시를 하는 경우 전산시스템에 의하여 객관적이고 정확하게 관리할 수 있는 방법을 통하여 지시를 하여야 한다.
- ④ 집합투자업자는 제1항 단서에 따라 지시를 하는 경우에는 투자신탁재산별로 미리 정하여진 자산배분명세에 따라 취득·처분 등의 결과를 공정하게 배분하며, 자산배분명세, 취득·처분 등의 결과, 배분결과 등에 관한 장부 및 서류를 작성하고 유지 관리한다.

제14조 (투자목적)

이 투자신탁은 집합투자증권에 주로 투자하는 모두투자신탁을 법 시행령 제94조 제2항 제4호에서 규정하는 주된 투자대상자산으로 하여 수익을 추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15조 (투자대상자산 등)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재산을 다음 각 호의 투자대상(투자대상 중 법 제4조에 따른 증권에 대하여는 그 증권에 표시될 수 있거나 표시되어야 할 권리가 전자증권법에 따라 전자등록된 경우 해당 권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투자방법으로 운용한다.

1. 신한마음편한적격TDF2050증권모투자신탁[주식혼합-재간접형]의 수익증권
2. 환율위험을 헤지 하기 위한, 법 제5조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통화 관련 장내외파생상품(이하 "통화관련파생상품"이라 한다)
3. 환율위험을 헤지 하기 위한 통화관련파생상품 거래에 증거금으로 사용하기 위한 잔존만기 1년 이내의 채권. 단, 국채증권, 한국은행 통화안정증권 및 정부가 원리금의 상환을 보증한 채권에 한함(이하 "채권"이라 한다). 채권에의 투자는 통화관련파생상품 거래에 따른 위탁증거금으로 사용하기 위해서만 투자할 수 있다. 다만, 통화관련파생상품의 포지션이 감소하여 일시적으로 위탁증거금으로 사용되지 않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4. 법 시행령 제268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신탁업자 고유재산과의 거래
5. 법 시행령 제345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금융기관에 대한 30일 이내의 단기대출
6. 금융기관에의 예치(만기 1년 이내인 상품에 한한다)
7. 상기 제1호 부터 제4호에 준하는 외화표시자산

제16조 (투자대상자산 취득한도)

집합투자업자는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투자신탁재산을 운용함에 있어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따른다.

1. 신한마음편한적격TDF2050증권모투자신탁[주식혼합-재간접형]에 투자는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0%이하로 한다.
2. 제15조 제1항 제1호의 모두투자신탁에 투자는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50% 초과로 한다.
3. 채권에의 투자는 투자신탁재산의 5%이내로 한다. 다만, 집합투자업자가 수익자들에게 최선의 이익이 된다고 판단하는 경우 또는 통화관련파생상품의 포지션이 감소하여 일시적으로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5%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4. 단기대출 및 금융기관에의 예치는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 이하로 한다. 다만, 집합투자업자가 수익자들에게 최선의 이익이 된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40%이하의 범위 내에서 10%를 초과할 수 있다.
5. 파생상품에의 투자는 파생상품 매매에 따른 위험평가액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뺀 가액의 10% 이하로 한다.

제17조 (운용 및 투자 제한)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자산을 운용함에 있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신탁업자에게 지시할 수 없다. 다만, 관련 법령 및 규정에서 예외적으로 인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여 [법시행령 제84조에서 정하는 집합투자업자의 이해관계인](#)에게 다음 각 목의 방법으로 운용하는 행위. 다만, 집합투자업자의 대주주나 계열회사인 이해관계인과는 다음 각 목의 방법으로 운용할 수 없다.
 - 가. 법 제83조제4항제1호에 따른 단기대출
 - 나. 환매조건부매수(증권을 일정기간 후에 환매도할 것을 조건으로 매수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하 같다)
2. [파생상품 매매에 따른 위험평가액이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뺀 가액의 100분의 100을 초과하는 행위](#)
3. 파생상품의 매매와 관련하여 기초자산 중 동일법인 등이 발행한 증권(그 법인 등이 발행한 증권과 관련된 증권에탁증권을 포함한다)의 가격변동으로 인한 위험평가액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여 투자하는 행위
4. 같은 거래상대방과의 장외파생상품 매매에 따른 거래상대방 위험평가액이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여 투자하는 행위
5. 법 시행령 제80조 제5항에서 정하는 적격 요건을 갖추지 못한 자와 장외파생상품을 매매하는 행위
6. 법 시행령 제86조에서 정하는 한도를 초과하여 집합투자업자의 계열회사가 발행한 증권을 취득하는 행위

제18조 (한도 및 제한의 예외)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6조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은 그 투자한도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제4호 및 제5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투자비율을 위반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투자한도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1. 투자신탁 최초설정일부터 1월간
 2. 투자신탁 회계기간 종료일 이전 1월간
 3. 투자신탁 계약기간 종료일 이전 1월간
 4. 3영업일 동안 누적하여 추가설정 또는 해지청구가 각각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는 경우
 5. 투자신탁재산인 모투자신탁 수익증권 등 자산의 가격변동으로 [제16조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을 위반하게 되는 경우
-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불가피하게 [제16조 제5호 및 제17조 제2호 내지 제4호](#)에 따른 투자한도를 초과하게 되는 경우에는 초과일부터 3개월까지(부도 등으로 처분이 불가능하거나 집합투자재산에 현저한 손실을 초래하지 아니하고는 처분이 불가능한 투자대상자산은 그 처분이 가능한 시기까지)는 그 투자한도에 적합한 것으로 본다.
 1. 투자신탁재산에 속하는 투자대상자산의 가격 변동
 2. 투자신탁의 일부해지
 3. 담보권의 실행 등 권리행사
 4. 투자신탁재산에 속하는 증권을 발행한 법인의 합병 또는 분할합병
 5. 그 밖에 투자대상자산의 추가 취득 없이 투자한도를 초과하게 된 경우
- ③ [제17조 제2호 내지 제4호](#)의 규정은 투자신탁의 최초설정일부터 1개월까지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4장 투자신탁재산의 보관 및 관리

제19조 (신탁업자의 선관주의 의무)

신탁업자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로써 투자신탁재산을 보관·관리하여야 하며, 수익자의 이익을 보호하여야 한다.

제20조 (신탁업자의 업무제한 등)

- ① 신탁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의 계열회사여서는 아니된다.
 1. 해당 집합투자기구
 2. 그 투자신탁재산을 운용하는 집합투자업자
- ② 신탁업자는 투자신탁재산을 자신의 고유재산, 다른 집합투자재산 또는 제삼자로부터 위탁 받은 재산과 구분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집합투자재산이라는 사실과 위탁자를 명기하여야 한다.
- ③ 신탁업자는 투자신탁재산 중 증권, 그 밖에 법 시행령 제268조제1항에 정하는 것을 자신의 고유재산과 구분하여 집합투자기구 별로 한국예탁결제원에 예탁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증권의 유통 가능성, 다른 법령에 따른 유통방법이 있는지 여부, 예탁의 실행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법 시행령 제63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④ 신탁업자는 집합투자업자가 그 신탁업자에 대하여 자산의 취득·처분의 이행 또는 보관·관리 등에 필요한 지시를 하는 경우 이를 각각의 집합투자재산 별로 이행하여야 한다.
- ⑤ 집합투자재산을 보관·관리하는 신탁업자는 자신이 보관·관리하는 집합투자재산을 자신의 고유재산, 다른 집합투자재산 또는 제삼자로부터 보관을 위탁받은 재산과 거래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집합투자재산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법시행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⑥ 집합투자재산을 보관·관리하는 신탁업자는 자신이 보관·관리하는 집합투자재산을 그 이해관계인의 고유재산과 거래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⑦ 집합투자재산을 보관·관리하는 신탁업자는 그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재산에 관한 정보를 자기의 고유재산의 운용, 자기가 운용하는 집합투자재산의 운용 또는 자기가 판매하는 집합투자증권의 판매를 위하여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1조 (운용행위 감시 의무 등)

- ① 신탁업자는 그 투자신탁재산을 운용하는 집합투자업자의 운용지시 또는 운용행위가 관련 법령 및 규정, 신탁계약 또는 투자설명서(예비투자설명서 및 간이투자설명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등을 위반하였는지 여부에 대하여 확인하고, 위반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집합투자업자에 대하여 그 운용지시 또는 운용행위의 철회·변경 또는 시정을 요구해야 한다.
- ② 신탁업자는 집합투자업자가 제1항에 따른 요구를 3영업일 이내에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하며 법 시행령 제269조제2항이 정하는 사항을 공시하여야 한다.
- ③ 집합투자업자는 제1항의 요구에 대하여 금융위원회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련당사자는 금융위원회의 결정을 따르도록 한다.
- ④ 신탁업자는 투자신탁재산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1. 투자설명서가 법령 및 신탁계약에 부합하는지 여부
 2. 법 제88조제1항·제2항에 따른 자산운용보고서의 작성이 적정한지 여부

3. 법 제93조제2항에 따른 위험관리방법의 작성이 적정한지 여부
 4. 법 제238조제1항에 따른 집합투자재산평가가 공정한지 여부
 5. 법 제238조제6항에 따른 기준가격의 산정이 적정한지 여부
 6. 제1항의 시정요구 등에 대한 집합투자업자의 이행명세
 7. 그 밖에 투자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⑤ 신탁업자는 제1항에 따른 요구를 하거나 제2항에 따른 보고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또는 제4항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집합투자업자에 대하여 관련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5장 수익증권의 판매 및 환매

제22조 (수익증권의 판매)

- ① 투자신탁의 집합투자업자는 본 수익증권을 판매하기 위해 판매회사와 판매계약 또는 위탁판매계약을 체결한다.
- ② 투자자는 판매회사를 통하여 이 수익증권을 취득할 수 있다.
- ③ 집합투자업자는 판매회사로 하여금 판매보수 또는 판매수수료와 관련하여 판매회사가 투자자에게 제공하는 용역 또는 서비스에 관한 내용이 기재된 자료를 제공하고 그 내용을 설명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23조 (판매가격)

- ① 수익증권의 판매가격은 투자자가 이 수익증권의 취득을 위하여 판매회사에 자금을 납입한 영업일부터 제3영업일에 공고되는 당해 종류의 수익증권의 기준가격(신규 종류 수익증권을 발행하는 때 또는 특정 종류의 수익증권이 전부 환매된 후 다시 발행되는 때에는 제28조 제2항을 준용한다)으로 한다. 다만, 이 투자신탁을 최초로 설정하는 때에는 투자신탁 최초설정일에 공고되는 당해 종류 수익증권의 기준가격으로 한다.
- ② 제1항 본문의 규정에 불구하고 투자자가 17시 경과 후에 자금을 납입한 경우 수익증권의 판매가격은 자금을 납입한 영업일부터 제4영업일에 공고되는 당해 종류 수익증권의 기준가격(신규 종류 수익증권을 발행하는 때 또는 특정 종류의 수익증권이 전부 환매된 후 다시 발행되는 때에는 제28조제2항을 준용한다)으로 한다.

제23조의2 (모투자신탁 수익증권의 매수 청구)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자가 판매회사에 자금을 납입한 경우 달리 운용할 사유가 없는 한 모투자신탁 수익증권의 매수를 청구하여야 한다.

제24조 (환매업무)

- ① 수익자는 언제든지 수익증권의 환매를 청구할 수 있다.
- ② 수익자가 수익증권의 환매를 청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수익증권을 판매한 판매회사에 청구하여야 한다. 다만, 판매회사가 해산, 인가취소, 업무정지 등 관련 법령 및 규정에서 정하는 사유(이하 "해산 등"이라 한다)로 인하여 환매청구에 응할 수 없는 경우에는 법 시행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집합투자업자에게 직접 청구할 수 있으며, 집합투자업자가 해산 등으로 인하여 환매에 응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신탁업자에게 직접 청구할 수 있다.

- ③ 제2항의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수익자로부터 수익증권의 환매청구를 받은 판매회사는 지체없이 집합투자업자에게 환매에 응할 것을 요구하여야 한다.

제24조의2 (모투자신탁 수익증권의 환매 청구)

집합투자업자는 모투자신탁에 환매를 청구하지 않더라도 이 투자신탁의 자금으로 환매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가 아닌 한 수익증권의 환매청구를 받은 날에 모투자신탁에 환매를 청구하여야 한다.

제25조 (환매가격 및 환매방법)

- ① 수익증권의 환매가격은 수익자가 판매회사에 환매를 청구한 날부터 제4영업일(17시 경과 후에 환매청구시 제5영업일)에 공고되는 당해 종류 수익증권의 기준가격으로 한다.
- ② 제24조의 규정에 따라 환매청구를 받거나 환매에 응할 것을 요구받은 집합투자업자(집합투자재산을 보관·관리하는 신탁업자를 포함한다)는 수익자가 환매를 청구한 날부터 제8영업일(17시 경과 후에 환매청구시 제9영업일)에 수익자에게 환매대금을 지급한다
- ③ 판매회사(제24조제2항 단서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그 집합투자업자 또는 신탁업자를 말한다)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집합투자업자 또는 신탁업자로부터 지급받은 환매대금에서 환매수수료 및 관련세금 등을 공제한 금액을 수익자에게 지급한다.
- ④ 환매대금은 투자신탁재산으로 보유중인 금전 또는 투자신탁재산을 매각하여 조성한 금전으로 지급한다. 다만, 이 투자신탁이 투자한 모투자신탁의 자투자신탁 전원 및 모투자신탁에 투자하는 자투자신탁 수익자 전원의 동의를 얻은 경우에는 모투자신탁의 투자신탁재산으로 지급할 수 있다.

제26조 (환매연기)

- ①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익증권의 환매에 응하여야 하는 집합투자업자(신탁업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투자신탁재산인 자산의 처분이 불가능한 경우 등 법 시행령 제256조에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환매일에 환매대금을 지급할 수 없게 된 경우 그 수익증권의 환매를 연기할 수 있다. 이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환매를 연기한 날부터 6주 이내에 수익자총회에서 수익증권의 환매에 관한 사항으로서 법 시행령 제257조제1항에서 정하는 사항을 결의하여야 한다.
- ② 집합투자업자는 수익자총회에서 수익증권의 환매에 관한 사항을 정하지 아니하거나 환매에 관하여 정한 사항의 실행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계속하여 환매를 연기할 수 있다.
- ③ 수익자총회에서 환매에 관한 사항이 의결되거나 환매를 계속 연기하는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지체없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정한 사항을 수익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1. 수익자총회에서 환매에 관한 사항을 의결한 경우
 - 가. 환매에 관하여 의결한 사항
 - 나. 기타 법 시행령 제257조제2항에서 정한 사항
 2. 환매연기를 계속하는 경우
 - 가. 환매를 연기하는 사유
 - 나. 환매를 연기하는 기간
 - 다. 환매를 재개하는 경우 환매대금의 지급방법
 - 라. 기타 법 시행령 제257조제3항에서 정한 사항
- ④ 환매연기사유의 전부 또는 일부가 해소되어 환매를 재개할 수 있을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환매가 연기된 수익자에 대하여 환매한다는 뜻을 통지하고 법 시행령 제258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환매대금을 지급한다.
- ⑤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재산의 일부가 제1항에 의한 환매연기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환매연기자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산(이하 "정상자산"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수익자가 보유하는 수익증권의 지분에 따라 환매에 응할 수 있다.

- ⑥ 집합투자업자는 제5항에 따라 환매가 연기된 투자신탁재산만으로 별도의 투자신탁을 설정할 수 있다.
- ⑦ 집합투자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4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환매청구에 응하지 아니할 수 있다.
 - 1. 수익자 또는 질권자로서 권리를 행사할 자를 정하기 위하여 일정한 날을 정하여 수익자명부에 기재된 수익자 또는 질권자를 그 권리를 행사할 수익자 또는 질권자로 보도록 한 경우로서 이 일정한 날의 제6영업일(17시 경과 후에 환매청구를 한 경우 제7영업일)전일과 그 권리를 행사할 날까지의 사이에 환매청구를 한 경우
 - 2. 법 또는 법에 의한 명령에 의하여 환매가 제한되는 경우

제6장 투자신탁재산 평가 및 회계

제27조 (투자신탁재산 평가)

- ① 집합투자업자는 법 제238조제1항에 따라 투자신탁재산을 시가에 따라 평가하되, 평가일 현재 신뢰할 만한 시가가 없는 경우 공정가액으로 평가하여야 한다.
- ② 집합투자업자는 제1항에 따른 투자신탁재산의 평가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법 제238조제 2항에서 정하는 집합투자재산평가위원회를 구성·운영하여야 한다.
- ③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재산에 대한 평가가 공정하고 정확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신탁업자의 확인을 받아 법 제238조 제3항에서 정하는 집합투자재산의 평가와 절차에 관한 기준(이하 이조에서 "집합투자재산평가기준"이라 한다)을 마련하여야 한다.
- ④ 집합투자업자는 제2항에 따른 집합투자재산평가위원회가 투자신탁재산을 평가한 경우 그 평가명세를 지체없이 신탁업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⑤ 신탁업자는 집합투자업자의 투자신탁재산의 평가가 법령 및 집합투자재산평가기준에 따라 공정하게 이루어졌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제28조 (기준가격 산정 및 공고)

- ① 집합투자업자는 제27조의 규정에 따른 투자신탁재산의 평가결과에 따라 기준가격을 산정한다. 기준가격[당해 종류 수익증권의 기준가격]은 제2항의 기준가격의 공고·게시일 전날의 재무상태표상에 계상된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차감한 금액(이하 "순자산총액[당해 종류 수익증권의 순자산총액]"이라 한다)을 공고·게시일 전날의 수익증권[당해 종류 수익증권] 총좌수로 나누어 산정하며, 1,000좌 단위로 원미만 셋째자리에서 4사5입하여 원미만 둘째자리까지 계산한다.
- ② 집합투자업자는 제1항에 따라 산정된 기준가격(모투자신탁의 기준가격 포함)을 매일 공고·게시하되, 이 투자신탁을 최초로 설정하는 날(신규 종류 수익증권을 발행하는 날 또는 특정 종류의 수익증권이 전부 환매된 후 다시 발행되는 날)의 기준가격은 1좌를 1원으로 하여 1,000원으로 공고한다. 다만, 수익자가 없는 종류 수익증권의 기준가격은 산정, 공고하지 않을 수 있다.
- ③ 집합투자업자가 기준가격 산정업무를 일반사무관리회사에 위탁한 경우 일반사무관리회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 투자신탁의 전체에 대한 기준가격 및 당해 종류 수익증권의 기준가격을 매일 산정하여 집합투자업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수수료는 이 투자신탁재산에서 부담한다.

제29조 (투자신탁의 회계기간) 이 투자신탁의 회계기간은 투자신탁의 최초설정일부터 매 1년간으로 한다. 다만, 신탁계약 해지시에는 투자신탁회계기간 초일부터 신탁계약의 해지일까지로 한다.

제30조 (투자신탁의 회계감사)

- ① 집합투자업자는 이 투자신탁의 결산기마다 다음 각 호의 서류 및 부속서류를 작성하여야 한다.
 1. 재무상태표
 2. 손익계산서
 3. 자산운용보고서
- ② 집합투자업자는 다음 각 호의 날부터 2월 이내에 법 제240조 제3항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 투자신탁재산에 대하여 회계감사인인 회계감사를 받아야 한다.
 1. 회계기간의 말일
 2. 투자신탁의 해지일
- ③ 회계감사인인 회계감사는 비용문제 등을 포함한 회계처리가 당해 종류별 수익증권과 이 투자신탁의 전체 수익권의 이익을 합리적으로 반영하고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

제31조 (이익분배)

- ① 집합투자업자는 이 투자신탁재산에서 발생한 당해 종류 수익증권별 이익금을 투자신탁회계기간 종료일 익영업일에 판매회사를 경유하여 수익자에게 분배한다.
- ② 집합투자업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익분배금을 판매회사를 경유하여 수익자에게 현금 또는 새로이 발행되는 수익증권으로 분배한다.
-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집합투자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익금은 분배를 유보하며, 이익금이 0보다 적은 경우에도 분배를 유보한다.
 1. 법 제238조에 따라 평가한 집합투자재산의 평가이익
 2. 법 제240조제1항의 회계처리기준에 따른 매매이익

제32조 (이익분배금에 의한 재투자)

- ① 수익자는 이익분배금에서 세액을 공제한 금액의 범위 내에서 이익분배금 지급일의 기준가격으로 당해 종류 수익증권을 매수할 수 있다.
- ② 이익분배금으로 수익증권을 매수하는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당해 수익증권 매수금액의 납입이 완료된 때에 제10조제1항의 방법으로 수익증권을 발행하여야 한다.

제33조 (상환금 등의 지급)

- ① 집합투자업자는 신탁계약기간이 종료되거나 투자신탁을 해지하는 경우 지체없이 판매사를 경유하여 투자신탁원본의 상환금 및 이익분배금(이하 "상환금 등"이라 한다)을 수익자에게 지급할 수 있도록 하며, 판매사는 상환금 등에서 관련세금 등을 공제한 금액을 수익자에게 지급한다.
- ② 집합투자업자가 제43조의 규정에 따라 이 투자신탁을 해지하는 경우에는 이 투자신탁이 투자한 모투자신탁의 자투자신탁 전원 및 모투자신탁에 투자하는 자투자신탁 수익자 전원의 동의를 얻은 경우에는 모투자신탁의 투자신탁재산으로 판매회사를 경유하여 수익자에게 상환금 등을 지급할 수 있다.
- ③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재산인 증권 등 자산의 매각지연 등의 사유로 인하여 상환금 등의 지급이 곤란한 경우에는 전자등록기관을 통하여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34조 (상환금 등의 시효 등)

- ① 상환금 등을 수익자가 그 지급개시일(제31조 내지 제33조의 규정에 따라 판매회사가 수익자에게

상환금 등을 지급하는 날을 말한다)부터 5년간 지급을 청구하지 아니한 때에는 판매회사가 취득할 수 있다.

- ② 신탁업자가 상환금 등을 판매회사에게 인도한 후에는 판매회사가 수익자에 대하여 그 지급에 대한 책임을 부담한다.

제7장 수익자총회

제35조 (수익자총회)

- ① 투자신탁에는 전체 수익자로 구성되는 수익자총회를 두며, 수익자총회는 관련 법령 또는 이 신탁계약에서 정한 사항 및 모투자신탁의 수익자총회 개최 사유 중 이 투자신탁 수익자의 이해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에 한하여 결의할 수 있다.
- ② 수익자총회는 투자신탁을 설정한 집합투자업자가 소집한다.
- ③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수익자총회의 의결을 요하는 경우로서 특정 종류의 수익증권 수익자에 대하여만 이해관계가 있는 때에는 그 종류의 수익자로 구성되는 수익자총회를 개최할 수 있다.
- ④ 투자신탁을 설정한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재산을 보관, 관리하는 신탁업자 또는 발행된 수익증권의 총좌수의 100분의 5 이상을 소유한 수익자가 수익자총회의 목적과 소집의 이유를 기재한 서면을 제출하여 수익자총회의 소집을 그 집합투자업자에 요청하는 경우 1개월 이내에 수익자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집합투자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수익자총회를 소집하기 위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신탁업자 또는 발행된 수익증권 총좌수의 100분의 5 이상을 소유한 수익자는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수익자총회를 개최할 수 있다.
- ⑤ 상법 제363조제1항 및 제2항은 수익자총회의 소집통지에 관하여 준용한다. 이 경우 "주주"는 각각 "수익자"로, "주주명부"는 "수익자명부"로, "회사"는 "집합투자업자"로 본다.
- ⑥ 수익자총회는 출석한 수익자의 의결권의 과반수와 발행된 수익증권 총좌수의 4분의 1이상의 수로 결의한다. 다만, 이 법에서 정한 수익자총회의 결의사항 외에 신탁계약으로 정한 수익자총회의 결의사항에 대하여는 출석한 수익자의 의결권의 과반수와 발행된 수익증권의 총좌수의 5분의 1이상의 수로 결의할 수 있다.
- ⑦ 수익자는 수익자총회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서면에 의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수익자총회에 출석한 수익자가 소유한 수익증권의 총좌수의 결의내용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도록 의결권을 행사(이하 이 항에서 "간주의결권행사"라 한다)한 것으로 본다.
 - 1. 수익자에게 법 시행령 제221조 제6항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의결권 행사에 관한 통지가 있었으나 의결권이 행사되지 아니하였을 것
 - 2. 간주의결권행사의 방법이 집합투자규약에 기재되어 있을 것
 - 3. 수익자총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한 수익증권의 총좌수가 발행된 수익증권의 총좌수의 10분의 1이상 일 것
 - 4. 그 밖에 수익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법 시행령 제221조 제7항에서 정하는 방법 및 절차를 따를 것
- ⑧ 투자신탁을 설정한 집합투자업자(제4항 후단에 따라 수익자총회를 소집하는 신탁업자 또는 발행된 수익증권 총좌수의 100분의 5 이상을 소유한 수익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는 제6항에 따른 수익자총회의 결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 그 날부터 2주 이내에 연기된 수익자총회(이하 "연기수익자총회"라 한다)를 소집하여야 한다.
- ⑨ 연기수익자총회의 결의에 관하여는 제6항 및 제7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발행된 수익증권 총좌수의 4분의 1이상"은 발행된 수익증권 총좌수의 8분의 1이상"으로 보고, "수익증권의 총좌수의 5분의

1이상”은 수익증권의 총좌수의 10분의 1이상”으로 본다.

- ⑩ 모투자신탁 수익자총회가 개최되어 그 수익자 총회의 목적이 자투자신탁 수익자에게 영향을 미치는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모투자신탁 수익자총회와 동일한 시간 및 장소에서 이 투자신탁의 수익자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 ⑪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수익자총회는 제4항, 제6항 내지 제9항의 규정을 준용함에 있어 “발행된 수익증권의 총좌수”는 “발행된 당해 종류 수익증권의 총좌수”로 본다.

제36조 (반대수익자의 매수청구권)

- ① 투자신탁의 수익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집합투자업자에게 수익증권의 수를 기재한 서면으로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수익증권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 1. 법 제18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른 신탁계약의 변경 또는 법제193조제2항에 따른 투자신탁의 합병에 대한 수익자총회의 결의에 반대(수익자총회 전에 해당 집합투자업자에게 서면으로 그 결의에 반대하는 의사를 통지한 경우로 한정한다)하는 수익자가 그 수익자총회의 결의일부터 20일 이내에 수익증권의 매수를 청구하는 경우
 - 2. 법 제19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투자신탁의 합병에 반대하는 수익자가 법 시행령 제222조제1항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수익증권의 매수를 청구하는 경우
- ② 투자신탁을 설정한 집합투자업자는 제1항에 따른 청구가 있는 경우 해당 수익자에게 수익증권의 매수에 따른 수수료, 그 밖의 비용을 부담시켜서는 아니 된다.
- ③ 투자신탁을 설정한 집합투자업자는 제1항에 따른 청구가 있는 경우에는 매수청구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투자신탁재산으로 그 수익증권을 매수하여야 한다. 다만, 매수자금이 부족하여 매수에 응할 수 없는 경우에는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수익증권의 매수를 연기할 수 있다.

제8장 보수 및 수수료 등

제37조 (보수)

- ① 투자신탁재산의 운용 및 관리 등에 대한 보수(이하 “투자신탁보수”라 한다)는 투자신탁이 부담하며, 그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1. 집합투자업자가 취득하는 집합투자업자보수
 - 2. 판매회사가 취득하는 판매회사보수
 - 3. 신탁업자가 취득하는 신탁업자보수
 - 4. 일반사무관리회사가 취득하는 일반사무관리회사보수
- ② 투자신탁보수의 계산기간(이하 “보수계산기간”이라 한다)은 투자신탁의 최초설정일로부터 매 3개월간으로 하며 보수계산기간 중 투자신탁보수(당해 종류 수익증권의 상당액)를 매일 재무상태표상에 계상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가 발생하는 때에 집합투자업자의 지시에 따라 신탁업자가 투자신탁재산에서 인출한다.
 - 1. 보수계산기간의 종료
 - 2. 투자신탁의 일부해지(해지분에 상당하는 투자신탁보수 인출에 한한다)
 - 3. 투자신탁의 전부해지
-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투자신탁보수는 다음 각 호의 보수율에 투자신탁재산의 연평균가액(매일의 투자신탁 순자산총액을 연간 누적하여 합한 금액을 연간 일수로 나눈 금액)에 보수계산기간의 일수를 곱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종류형 투자신탁인 경우에는 당해 종류 수익증권 보수율에 당해 종류

수익증권에 해당하는 투자신탁재산의 연평균가액(매일의 투자신탁 순자산총액을 연간 누적하여 합한 금액을 연간 일수로 나눈 금액)에 보수계산기간의 일수를 곱한 금액으로 하되, 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 및 일반사무관리회사 보수율은 종류별로 차등을 두어서는 아니된다.

[최초설정일로부터 2034년12월31일까지 적용하는 투자신탁보수]

1. 종류 A1 수익증권
 - 가. 집합투자업자보수율 : 연 1,000분의 [3.300]
 - 나. 판매회사보수율 : 연 1,000분의 [6.400]
 - 다. 신탁업자보수율 : 연 1,000분의 [0.300]
 - 라. 일반사무관리회사보수율 : 연 1,000분의 [0.180]
2. 종류 A-e 수익증권
 - 가. 집합투자업자보수율 : 연 1,000분의 [3.300]
 - 나. 판매회사보수율 : 연 1,000분의 [3.200]
 - 다. 신탁업자보수율 : 연 1,000분의 [0.300]
 - 라. 일반사무관리회사보수율 : 연 1,000분의 [0.180]
3. 종류 A-g 수익증권
 - 가. 집합투자업자보수율 : 연 1,000분의 [3.300]
 - 나. 판매회사보수율 : 연 1,000분의 [4.480]
 - 다. 신탁업자보수율 : 연 1,000분의 [0.300]
 - 라. 일반사무관리회사보수율 : 연 1,000분의 [0.180]
4. 종류 C1 수익증권
 - 가. 집합투자업자보수율 : 연 1,000분의 [3.300]
 - 나. 판매회사보수율 : 연 1,000분의 [9.300]
 - 다. 신탁업자보수율 : 연 1,000분의 [0.300]
 - 라. 일반사무관리회사보수율 : 연 1,000분의 [0.180]
5. 종류 C-e 수익증권
 - 가. 집합투자업자보수율 : 연 1,000분의 [3.300]
 - 나. 판매회사보수율 : 연 1,000분의 [4.650]
 - 다. 신탁업자보수율 : 연 1,000분의 [0.300]
 - 라. 일반사무관리회사보수율 : 연 1,000분의 [0.180]
6. 종류 C-g 수익증권
 - 가. 집합투자업자보수율 : 연 1,000분의 [3.300]
 - 나. 판매회사보수율 : 연 1,000분의 [6.510]
 - 다. 신탁업자보수율 : 연 1,000분의 [0.300]
 - 라. 일반사무관리회사보수율 : 연 1,000분의 [0.180]
7. 종류 C-i 수익증권
 - 가. 집합투자업자보수율 : 연 1,000분의 [3.300]
 - 나. 판매회사보수율 : 연 1,000분의 [0.300]
 - 다. 신탁업자보수율 : 연 1,000분의 [0.300]
 - 라. 일반사무관리회사보수율 : 연 1,000분의 [0.180]
8. 종류 C-p 수익증권
 - 가. 집합투자업자보수율 : 연 1,000분의 [3.300]

- 나. 판매회사보수율 : 연 1,000분의 [9.100]
- 다. 신탁업자보수율 : 연 1,000분의 [0.300]
- 라. 일반사무관리회사보수율 : 연 1,000분의 [0.180]
- 9. 종류 C-r 수익증권
 - 가. 집합투자업자보수율 : 연 1,000분의 [3.300]
 - 나. 판매회사보수율 : 연 1,000분의 [7.200]
 - 다. 신탁업자보수율 : 연 1,000분의 [0.300]
 - 라. 일반사무관리회사보수율 : 연 1,000분의 [0.180]
- 10. 종류 C-s 수익증권
 - 가. 집합투자업자보수율 : 연 1,000분의 [3.300]
 - 나. 판매회사보수율 : 연 1,000분의 [0.090]
 - 다. 신탁업자보수율 : 연 1,000분의 [0.300]
 - 라. 일반사무관리회사보수율 : 연 1,000분의 [0.180]
- 11. 종류 C-w 수익증권
 - 가. 집합투자업자보수율 : 연 1,000분의 [3.300]
 - 나. 판매회사보수율 : 연 1,000분의 [0.000]
 - 다. 신탁업자보수율 : 연 1,000분의 [0.300]
 - 라. 일반사무관리회사보수율 : 연 1,000분의 [0.180]
- 12. 종류 S 수익증권
 - 가. 집합투자업자보수율 : 연 1,000분의 [3.300]
 - 나. 판매회사보수율 : 연 1,000분의 [2.500]
 - 다. 신탁업자보수율 : 연 1,000분의 [0.300]
 - 라. 일반사무관리회사보수율 : 연 1,000분의 [0.180]
- 13. 종류 S-p 수익증권
 - 가. 집합투자업자보수율 : 연 1,000분의 [3.300]
 - 나. 판매회사보수율 : 연 1,000분의 [2.000]
 - 다. 신탁업자보수율 : 연 1,000분의 [0.300]
 - 라. 일반사무관리회사보수율 : 연 1,000분의 [0.180]
- 14. 종류 C-pe 수익증권
 - 가. 집합투자업자보수율 : 연 1,000분의 [3.300]
 - 나. 판매회사보수율 : 연 1,000분의 [4.550]
 - 다. 신탁업자보수율 : 연 1,000분의 [0.300]
 - 라. 일반사무관리회사보수율 : 연 1,000분의 [0.180]
- 15. 종류 C-re 수익증권
 - 가. 집합투자업자보수율 : 연 1,000분의 [3.300]
 - 나. 판매회사보수율 : 연 1,000분의 [3.600]
 - 다. 신탁업자보수율 : 연 1,000분의 [0.300]
 - 라. 일반사무관리회사보수율 : 연 1,000분의 [0.180]
- 16. 종류 S-R 수익증권
 - 가. 집합투자업자보수율 : 연 1,000분의 [3.300]
 - 나. 판매회사보수율 : 연 1,000분의 [1.900]
 - 다. 신탁업자보수율 : 연 1,000분의 [0.300]

라. 일반사무관리회사보수율 : 연 1,000분의 [0.180]

17. 종류 C-O 수익증권

가. 집합투자업자보수율 : 연 1,000분의 [3.300]

나. 판매회사보수율 : 연 1,000분의 [1.800]

다. 신탁업자보수율 : 연 1,000분의 [0.300]

라. 일반사무관리회사보수율 : 연 1,000분의 [0.180]

18. 종류 C- r2 수익증권

가. 집합투자업자보수율 : 연 1,000분의 [3.300]

나. 판매회사보수율 : 연 1,000분의 [0.100]

다. 신탁업자보수율 : 연 1,000분의 [0.300]

라. 일반사무관리회사보수율 : 연 1,000분의 [0.180]

[2035년1월1일부터 2039년12월31일까지 적용하는 투자신탁보수]

1. 종류 A1 수익증권

가. 집합투자업자보수율 : 연 1,000분의 [2.800]

나. 판매회사보수율 : 연 1,000분의 [4.200]

다. 신탁업자보수율 : 연 1,000분의 [0.300]

라. 일반사무관리회사보수율 : 연 1,000분의 [0.180]

2. 종류 A-e 수익증권

가. 집합투자업자보수율 : 연 1,000분의 [2.800]

나. 판매회사보수율 : 연 1,000분의 [2.100]

다. 신탁업자보수율 : 연 1,000분의 [0.300]

라. 일반사무관리회사보수율 : 연 1,000분의 [0.180]

3. 종류 A-g 수익증권

가. 집합투자업자보수율 : 연 1,000분의 [2.800]

나. 판매회사보수율 : 연 1,000분의 [2.940]

다. 신탁업자보수율 : 연 1,000분의 [0.300]

라. 일반사무관리회사보수율 : 연 1,000분의 [0.180]

4. 종류 C1 수익증권

가. 집합투자업자보수율 : 연 1,000분의 [2.800]

나. 판매회사보수율 : 연 1,000분의 [7.600]

다. 신탁업자보수율 : 연 1,000분의 [0.300]

라. 일반사무관리회사보수율 : 연 1,000분의 [0.180]

5. 종류 C-e 수익증권

가. 집합투자업자보수율 : 연 1,000분의 [2.800]

나. 판매회사보수율 : 연 1,000분의 [3.800]

다. 신탁업자보수율 : 연 1,000분의 [0.300]

라. 일반사무관리회사보수율 : 연 1,000분의 [0.180]

6. 종류 C-g 수익증권

가. 집합투자업자보수율 : 연 1,000분의 [2.800]

나. 판매회사보수율 : 연 1,000분의 [5.320]

다. 신탁업자보수율 : 연 1,000분의 [0.300]

- 라. 일반사무관리회사보수율 : 연 1,000분의 [0.180]
7. 종류 C-i 수익증권
- 가. 집합투자업자보수율 : 연 1,000분의 [2.800]
- 나. 판매회사보수율 : 연 1,000분의 [0.300]
- 다. 신탁업자보수율 : 연 1,000분의 [0.300]
- 라. 일반사무관리회사보수율 : 연 1,000분의 [0.180]
8. 종류 C-p 수익증권
- 가. 집합투자업자보수율 : 연 1,000분의 [2.800]
- 나. 판매회사보수율 : 연 1,000분의 [6.800]
- 다. 신탁업자보수율 : 연 1,000분의 [0.300]
- 라. 일반사무관리회사보수율 : 연 1,000분의 [0.180]
9. 종류 C-r 수익증권
- 가. 집합투자업자보수율 : 연 1,000분의 [2.800]
- 나. 판매회사보수율 : 연 1,000분의 [5.300]
- 다. 신탁업자보수율 : 연 1,000분의 [0.300]
- 라. 일반사무관리회사보수율 : 연 1,000분의 [0.180]
10. 종류 C-s 수익증권
- 가. 집합투자업자보수율 : 연 1,000분의 [2.800]
- 나. 판매회사보수율 : 연 1,000분의 [0.090]
- 다. 신탁업자보수율 : 연 1,000분의 [0.300]
- 라. 일반사무관리회사보수율 : 연 1,000분의 [0.180]
11. 종류 C-w 수익증권
- 가. 집합투자업자보수율 : 연 1,000분의 [2.800]
- 나. 판매회사보수율 : 연 1,000분의 [0.000]
- 다. 신탁업자보수율 : 연 1,000분의 [0.300]
- 라. 일반사무관리회사보수율 : 연 1,000분의 [0.180]
12. 종류 S 수익증권
- 가. 집합투자업자보수율 : 연 1,000분의 [2.800]
- 나. 판매회사보수율 : 연 1,000분의 [1.900]
- 다. 신탁업자보수율 : 연 1,000분의 [0.300]
- 라. 일반사무관리회사보수율 : 연 1,000분의 [0.180]
13. 종류 S-p 수익증권
- 가. 집합투자업자보수율 : 연 1,000분의 [2.800]
- 나. 판매회사보수율 : 연 1,000분의 [1.500]
- 다. 신탁업자보수율 : 연 1,000분의 [0.300]
- 라. 일반사무관리회사보수율 : 연 1,000분의 [0.180]
14. 종류 C-pe 수익증권
- 가. 집합투자업자보수율 : 연 1,000분의 [2.800]
- 나. 판매회사보수율 : 연 1,000분의 [3.400]
- 다. 신탁업자보수율 : 연 1,000분의 [0.300]
- 라. 일반사무관리회사보수율 : 연 1,000분의 [0.180]
15. 종류 C-re 수익증권

- 가. 집합투자업자보수율 : 연 1,000분의 [2.800]
- 나. 판매회사보수율 : 연 1,000분의 [2.650]
- 다. 신탁업자보수율 : 연 1,000분의 [0.300]
- 라. 일반사무관리회사보수율 : 연 1,000분의 [0.180]
- 16. 종류 S-R 수익증권
 - 가. 집합투자업자보수율 : 연 1,000분의 [2.800]
 - 나. 판매회사보수율 : 연 1,000분의 [1.400]
 - 다. 신탁업자보수율 : 연 1,000분의 [0.300]
 - 라. 일반사무관리회사보수율 : 연 1,000분의 [0.180]
- 17. 종류 C-O 수익증권
 - 가. 집합투자업자보수율 : 연 1,000분의 [2.800]
 - 나. 판매회사보수율 : 연 1,000분의 [1.480]
 - 다. 신탁업자보수율 : 연 1,000분의 [0.300]
 - 라. 일반사무관리회사보수율 : 연 1,000분의 [0.180]
- 18. 종류 C- r2 수익증권
 - 가. 집합투자업자보수율 : 연 1,000분의 [2.800]
 - 나. 판매회사보수율 : 연 1,000분의 [0.100]
 - 다. 신탁업자보수율 : 연 1,000분의 [0.300]
 - 라. 일반사무관리회사보수율 : 연 1,000분의 [0.180]

[2040년1월1일부터 투자신탁 해지일까지 적용하는 투자신탁보수]

- 1. 종류 A1 수익증권
 - 가. 집합투자업자보수율 : 연 1,000분의 [2.300]
 - 나. 판매회사보수율 : 연 1,000분의 [2.000]
 - 다. 신탁업자보수율 : 연 1,000분의 [0.300]
 - 라. 일반사무관리회사보수율 : 연 1,000분의 [0.180]
- 2. 종류 A-e 수익증권
 - 가. 집합투자업자보수율 : 연 1,000분의 [2.300]
 - 나. 판매회사보수율 : 연 1,000분의 [1.000]
 - 다. 신탁업자보수율 : 연 1,000분의 [0.300]
 - 라. 일반사무관리회사보수율 : 연 1,000분의 [0.180]
- 3. 종류 A-g 수익증권
 - 가. 집합투자업자보수율 : 연 1,000분의 [2.300]
 - 나. 판매회사보수율 : 연 1,000분의 [1.400]
 - 다. 신탁업자보수율 : 연 1,000분의 [0.300]
 - 라. 일반사무관리회사보수율 : 연 1,000분의 [0.180]
- 4. 종류 C1 수익증권
 - 가. 집합투자업자보수율 : 연 1,000분의 [2.300]
 - 나. 판매회사보수율 : 연 1,000분의 [5.400]
 - 다. 신탁업자보수율 : 연 1,000분의 [0.300]
 - 라. 일반사무관리회사보수율 : 연 1,000분의 [0.180]
- 5. 종류 C-e 수익증권

- 가. 집합투자업자보수율 : 연 1,000분의 [2.300]
- 나. 판매회사보수율 : 연 1,000분의 [2.700]
- 다. 신탁업자보수율 : 연 1,000분의 [0.300]
- 라. 일반사무관리회사보수율 : 연 1,000분의 [0.180]
- 6. 종류 C-g 수익증권
 - 가. 집합투자업자보수율 : 연 1,000분의 [2.300]
 - 나. 판매회사보수율 : 연 1,000분의 [3.780]
 - 다. 신탁업자보수율 : 연 1,000분의 [0.300]
 - 라. 일반사무관리회사보수율 : 연 1,000분의 [0.180]
- 7. 종류 C-i 수익증권
 - 가. 집합투자업자보수율 : 연 1,000분의 [2.300]
 - 나. 판매회사보수율 : 연 1,000분의 [0.300]
 - 다. 신탁업자보수율 : 연 1,000분의 [0.300]
 - 라. 일반사무관리회사보수율 : 연 1,000분의 [0.180]
- 8. 종류 C-p 수익증권
 - 가. 집합투자업자보수율 : 연 1,000분의 [2.300]
 - 나. 판매회사보수율 : 연 1,000분의 [4.900]
 - 다. 신탁업자보수율 : 연 1,000분의 [0.300]
 - 라. 일반사무관리회사보수율 : 연 1,000분의 [0.180]
- 9. 종류 C-r 수익증권
 - 가. 집합투자업자보수율 : 연 1,000분의 [2.300]
 - 나. 판매회사보수율 : 연 1,000분의 [3.900]
 - 다. 신탁업자보수율 : 연 1,000분의 [0.300]
 - 라. 일반사무관리회사보수율 : 연 1,000분의 [0.180]
- 10. 종류 C-s 수익증권
 - 가. 집합투자업자보수율 : 연 1,000분의 [2.300]
 - 나. 판매회사보수율 : 연 1,000분의 [0.090]
 - 다. 신탁업자보수율 : 연 1,000분의 [0.300]
 - 라. 일반사무관리회사보수율 : 연 1,000분의 [0.180]
- 11. 종류 C-w 수익증권
 - 가. 집합투자업자보수율 : 연 1,000분의 [2.300]
 - 나. 판매회사보수율 : 연 1,000분의 [0.000]
 - 다. 신탁업자보수율 : 연 1,000분의 [0.300]
 - 라. 일반사무관리회사보수율 : 연 1,000분의 [0.180]
- 12. 종류 S 수익증권
 - 가. 집합투자업자보수율 : 연 1,000분의 [2.300]
 - 나. 판매회사보수율 : 연 1,000분의 [0.800]
 - 다. 신탁업자보수율 : 연 1,000분의 [0.300]
 - 라. 일반사무관리회사보수율 : 연 1,000분의 [0.180]
- 13. 종류 S-p 수익증권
 - 가. 집합투자업자보수율 : 연 1,000분의 [2.300]
 - 나. 판매회사보수율 : 연 1,000분의 [0.600]

- 다. 신탁업자보수율 : 연 1,000분의 [0.300]
- 라. 일반사무관리회사보수율 : 연 1,000분의 [0.180]
- 14. 종류 C-pe 수익증권
 - 가. 집합투자업자보수율 : 연 1,000분의 [2.300]
 - 나. 판매회사보수율 : 연 1,000분의 [2.450]
 - 다. 신탁업자보수율 : 연 1,000분의 [0.300]
 - 라. 일반사무관리회사보수율 : 연 1,000분의 [0.180]
- 15. 종류 C-re 수익증권
 - 가. 집합투자업자보수율 : 연 1,000분의 [2.300]
 - 나. 판매회사보수율 : 연 1,000분의 [1.950]
 - 다. 신탁업자보수율 : 연 1,000분의 [0.300]
 - 라. 일반사무관리회사보수율 : 연 1,000분의 [0.180]
- 16. 종류 S-R 수익증권
 - 가. 집합투자업자보수율 : 연 1,000분의 [2.300]
 - 나. 판매회사보수율 : 연 1,000분의 [0.500]
 - 다. 신탁업자보수율 : 연 1,000분의 [0.300]
 - 라. 일반사무관리회사보수율 : 연 1,000분의 [0.180]
- 17. 종류 C-O 수익증권
 - 가. 집합투자업자보수율 : 연 1,000분의 [2.300]
 - 나. 판매회사보수율 : 연 1,000분의 [1.060]
 - 다. 신탁업자보수율 : 연 1,000분의 [0.300]
 - 라. 일반사무관리회사보수율 : 연 1,000분의 [0.180]
- 18. 종류 C- r2 수익증권
 - 가. 집합투자업자보수율 : 연 1,000분의 [2.300]
 - 나. 판매회사보수율 : 연 1,000분의 [0.100]
 - 다. 신탁업자보수율 : 연 1,000분의 [0.300]
 - 라. 일반사무관리회사보수율 : 연 1,000분의 [0.180]

제38조 (판매수수료)

- ① 판매회사는 종류A1 수익증권 및 종류 A-e 수익증권 및 종류 A-g 수익증권의 판매행위에 대한 대가로 수익증권을 매수하는 시점에 수익자로부터 선취판매수수료를 취득할 수 있다.
- ② 선취판매수수료는 납입금액에 대해 판매금액 또는 납입횟수에 따라 차등적으로 부과할 수 있다.
- ③ 이 집합투자기구는 다음 각 호의 종류별로 선취판매수수료를 수익자로부터 취득할 수 있다.
 1. 종류 A1 수익증권 : 납입금액의 100분의 1.00 이내
 2. 종류 A-e 수익증권 : 납입금액의 100분의 0.50 이내
 3. 종류 A-g 수익증권 : 납입금액의 100분의 0.70 이내
 4. 종류 C1 수익증권, 종류 C-e 수익증권, 종류 C-g 수익증권, 종류 C-i 수익증권, 종류 C-p 수익증권, 종류 C-r 수익증권, 종류 C-s 수익증권, 종류 C-w 수익증권, 종류 S 수익증권, 종류 S-p 수익증권, 종류 C-pe 수익증권, 종류 C-re 수익증권, 종류 S-R 수익증권, 종류 C-O 수익증권, 종류C-r2 수익증권 : 없음
- ④ 제3항제1호 내지 제3호의 선취판매수수료율은 해당 범위 내에서 판매회사가 정한다.
- ⑤ 판매회사는 종류S 수익증권을 판매하는 경우 판매행위에 대한 대가로 수익증권을 환매하는 시점에 수익자로부터 후취판매수수료를 취득한다. 다만, 제3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해 이익분배금으로 매수한

수익증권의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하며 제50조의 규정에 의한 수익증권저축약관에서 정한 바에 따라 목적식 투자 고객 등에 대하여 후취판매수수료를 면제할 수 있다.

⑥ 제5항의 규정에 의한 후취판매수수료는 환매금액(수익증권 환매 시 적용하는 기준가격에 환매하는 수익권 좌수를 곱한 금액을 1,000으로 나눈 금액)을 기준으로 수익증권을 보유한 기간(당해 수익증권의 매수일을 기산일로 하여 환매 시 적용되는 당해 수익증권의 기준가격 적용일까지를 말한다)에 따라 다음에서 정하는 범위 내에서 판매회사별로 차등 적용할 수 있다.

1. 종류 S 수익증권: 3년 미만 환매시 환매금액의 100분의 0.15이내

⑦ 판매회사별 판매수수료율은 수익증권을 판매한 판매회사 및 한국금융투자협회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공시한다.

제39조 (환매수수료)

이 투자신탁은 수익자가 수익증권을 환매하는 경우 환매수수료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제40조 (기타 운용비용 등)

① 투자신탁재산의 운용 등에 소요되는 비용은 수익자의 부담으로 하며, 집합투자업자의 지시에 따라 신탁업자가 투자신탁재산에서 인출하여 지급한다. 다만, 특정 종류 수익증권의 수익자에 대하여만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특정 종류 수익증권의 수익자에게만 비용을 부담시켜야 한다.

② 제1항에서 "비용"이라 함은 투자신탁재산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비용을 말한다.

1. 증권 등의 매매수수료
2. 증권 등의 예탁 및 결제비용
3. 투자신탁재산의 회계감사비용
4. 수익자명부 관리비용
5. 전체 수익자로 구성되는 수익자총회 관련비용
6. 투자신탁재산에 관한 소송비용(단, 집합투자업자의 귀책사유인 경우 제외)
7. 증권 등 자산의 가격정보비용
8. 투자신탁재산의 운용에 필요한 지적재산권비용
9. 기타 이에 준하는 비용으로 투자신탁재산의 운용 등에 소요되는 비용

③ 제1항 단서규정에서 "특정 종류 수익증권의 수익자에게 부담시키는 비용"이라 함은 당해 종류 수익증권의 수익자에 대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투자신탁재산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비용을 말한다.

1. 특정 종류 수익증권의 수익자로 구성되는 수익자총회 관련비용
2. 특정 종류 수익자에게 부담시키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단되는 비용

제9장 신탁계약의 변경 및 해지 등

제41조 (신탁계약의 변경)

① 집합투자업자는 신탁계약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신탁업자와 변경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신탁계약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미리 제35조에 따른 수익자총회의 결의를 거쳐야 한다.

1. 집합투자업자·신탁업자 등이 받는 보수, 그 밖의 수수료의 인상
2. 신탁업자의 변경(제42조 제3항 각 호의 경우는 제외한다)
3. 신탁계약기간의 변경(투자신탁을 설정할 당시에 그 기간변경이 신탁계약서에 명시되어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4. 그 밖에 수익자의 이익과 관련된 중요한 사항으로서 법 시행령 제217조에서 정하는 사항

- ② 집합투자업자는 제1항에 따라 신탁계약을 변경한 경우에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시하여야 하며, 제1항 후단에 따라 신탁계약을 변경한 경우에는 공시 외에 이를 수익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③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신탁계약의 단순한 자구수정 등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거나 법령 또는 금융위원회의 명령에 따라 신탁계약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집합투자업자 및 판매회사의 영업점포 내에 1월 이상 게시하여야 한다.
- ④ 수익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시일(모투자신탁의 신탁계약 변경의 경우 제2항에 의하여 공시 또는 통지된 날을 말함)부터 1월 이내 판매회사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하고 수익증권의 환매를 청구할 수 있다.
- ⑤ 이 신탁계약에 규정된 사항 중 법령 등의 변경으로 그 적용이 의무화된 경우에는 그 변경된 바에 따른다.

제42조 (집합투자업자 및 신탁업자의 변경)

- ① 이 투자신탁의 집합투자업자나 신탁업자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수익자총회 결의를 거쳐야 한다.
- ② 집합투자업자 변경의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수익자총회 결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변경할 수 있다.
 - 1. 합병·분할·분할합병
 - 2. 법 제420조 제3항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금융위원회의 조치에 따라 집합투자업자가 변경되는 경우
 - 3.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제6호부터 제8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금융위원회의 명령에 따라 집합투자업자가 변경되는 경우
- ③ 신탁업자 변경의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수익자총회 결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변경할 수 있다.
 - 1. 합병·분할·분할합병
 - 2. 영업양도 등으로 신탁계약의 전부가 이전되는 경우
 - 3. 법 제184조제4항, 법 제246조제1항 등 관련 법령의 준수를 위하여 불가피하게 신탁계약의 일부가 이전되는 경우
 - 4. 법 제420조제3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금융위원회의 조치에 따라 신탁업자가 변경되는 경우
 - 5.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제6호부터 제8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금융위원회의 명령에 따라 신탁업자가 변경되는 경우
 - 6. 법시행령 제245조 제5항에 따라 둘 이상의 집합투자기구의 자산을 다른 모집합투자기구로 이전함에 따라 그 집합투자기구의 신탁업자가 변경되는 경우

제42조의2 (집합투자업자 및 신탁업자의 변경 사유·절차 및 손실·손해 배상)

- ① 다음 각 호외의 사유로 제42조제1항에 따라 집합투자업자나 신탁업자를 변경하는 경우 수익자는 제37조와는 별도로 제2항 내지 제3항에 따른 투자신탁 보수 또는 비용을 지급해야 한다.
 - 1. 집합투자업자 및 신탁업자가 법령·신탁계약서에 중대한 위반 행위를 한 경우
 - 2. 집합투자업자 및 신탁업자가 고의 또는 중과실로 이 투자신탁재산에 중대한 손실 또는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
 - 3. 집합투자업자 및 신탁업자가 집합투자업자 및 신탁업자의 변경에 동의한 경우

- ② 제1항에 의한 집합투자업자 변경에 따른 수익자총회 결의의 경우 집합투자업자 변경 수익자총회 결의일 익영업일의 투자신탁 순자산 총액을 기준으로 계산한 180일 분에 해당하는 집합투자업자보수와 집합투자업자가 투자신탁 설정과 관련하여 집합투자업자의 계산으로 지급한 비용(자문료, 시스템개발비 등)을 집합투자업자의 지시에 따라 신탁업자가 수익자 총회 결의일로부터 제5영업일 이내 투자신탁재산에서 인출하여 집합투자업자에게 지급한다.
- ③ 제1항에 의한 신탁업자 변경에 따른 수익자총회 결의의 경우 신탁업자가 투자신탁 설정과 관련하여 신탁업자의 계산으로 지급한 비용(자문료, 시스템개발비 등)을 집합투자업자의 지시에 따라 신탁업자가 수익자 총회 결의일로부터 제5영업일 이내 투자신탁재산에서 인출하여 신탁업자에게 지급한다.
- ④ 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는 제2항 내지 제3항 적용과는 별도로 손해가 발생할 경우 수익자를 상대로 (제35조 제4항에 따른 신탁업자가 수익자총회를 요청하는 경우는 수익자 및 신탁업자로 한다)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제43조 (집합투자기구의 해지)

- ① 투자신탁을 설정한 집합투자업자는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투자신탁을 해지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이 투자신탁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그 해지사실을 지체 없이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1. 수익자 전원이 동의한 경우
 2. 수익증권 전부에 대한 환매의 청구를 받아 신탁계약을 해지하려는 경우
 3. 투자신탁을 설정한 후 1년이 되는 날에 투자신탁의 원본액이 50억원 미만인 경우
 4. 투자신탁을 설정하고 1년이 지난 후 1개월간 계속하여 투자신탁의 원본액이 50억원 미만인 경우
- ② 투자신탁을 설정한 집합투자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투자신탁을 해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그 해지사실을 지체 없이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1. 신탁계약에서 정한 신탁계약기간의 종료
 2. 수익자총회의 투자신탁 해지 결의
 3. 투자신탁의 피흡수합병
 4. 투자신탁의 등록 취소
 5. 수익자의 총수가 1인이 되는 경우. 다만, 법 제6조제6항에 따라 인정되거나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법시행령 제224조의2에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③ 제1항 제3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이 투자신탁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해지사유, 해지일자, 상환금 등의 지급방법 및 기타 해지관련사항을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시하고, 제48조에 따라 공고하거나 전자등록기관을 통하여 수익자에게 개별통지하여야 한다.
- ④ 최초설정일 이후 6개월이 되는 날에 투자신탁 원본액이 15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제35조 및 제36조에 따른 수익자총회 없이 신탁계약 변경을 통하여 "신한퇴직연금증권모투자신탁[주식-재간접형]"와 "신한 퇴직연금증권모투자신탁[채권-재간접형]"의 자투자신탁으로 전환하며, 제1항제3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투자신탁의 향후 처리 계획(해지, 합병, 모자형 전환, 존속 등)을 신탁업자와 협의하여 정한다.

제44조 (미수금 및 미지급금의 처리)

- ① 집합투자업자는 제43조에 따라 투자신탁을 해지하는 경우 미수금 채권이 있는 때에는 금융투자업규정제7-11조제1항이 정하는 공정가액으로 투자신탁을 해지하는 날에 그 미수금 채권을 양수하여야 한다. 다만, 그 미수금 채권을 법 시행령 제87조제1항제3호에 따라 거래하는 경우에는 그

거래에 의할 수 있다.

- ② 집합투자업자는 제43조에 따라 투자신탁을 해지하는 경우 미지급금 채무가 있는 때에는 제1항의 공정가액으로 투자신탁을 해지하는 날에 그 미지급금 채무를 양수하여야 한다. 다만, 그 미지급금 채무가 확정된 경우로서 법 시행령 제87조제1항제3호에 따라 거래하는 경우에는 그 거래에 의할 수 있다.

제10장 보칙

제45조 (투자신탁의 합병)

- ① 투자신탁을 설정한 집합투자업자는 그 집합투자업자가 운용하는 다른 투자신탁을 흡수하는 방법으로 투자신탁을 합병할 수 있다.
- ② 투자신탁을 설정한 집합투자업자는 제1항에 따라 투자신탁을 합병하고자 하는 경우 법 제193조제2항 각 호에서 정하는 사항을 기재한 합병계획서를 작성하여 합병하는 각 투자신탁의 수익자총회의 결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할 우려가 적은 소규모 투자신탁의 합병 등 법 시행령 제225조의2에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46조 (자기집합투자증권의 취득 제한 등)

- ① 집합투자업자는 집합투자기구의 계산으로 그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을 취득하거나 질권의 목적으로 받지 못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집합투자기구의 계산으로 그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을 취득할 수 있다.
 - 1. 담보권의 실행 등 권리 행사에 필요한 경우. 이 경우 취득한 집합투자증권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처분하여야 한다.
 - 2. 제36조의 규정에 따라 수익증권을 매수하는 경우
- ② 집합투자업자는 제1항제1호 전단에 따라 취득한 집합투자증권을 취득일부터 1개월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처분하여야 한다.
 - 1. 전자증권법에 따른 말소의 전자등록
 - 2.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를 통한 매도

제47조 (금전차입 등의 제한)

- ①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재산을 운용함에 있어서 투자신탁의 계산으로 금전을 차입하지 못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투자신탁의 계산으로 금전을 차입할 수 있다.
 - 1. 제24조에 따른 수익증권의 환매청구가 대량으로 발생하여 일시적으로 환매대금의 지급이 곤란한 때
 - 2. 제36조에 따른 매수청구가 대량으로 발생하여 일시적으로 매수대금의 지급이 곤란한 때
 - 3. 그 밖에 집합투자기구의 운용 및 결제 과정에서 일시적으로 금전의 차입이 필요하고 투자자 보호 및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할 우려가 없는 때로서 법시행령 제83조제2항에서 정하는 때
- ② 제1항에 따라 투자신탁의 계산으로 금전을 차입하는 경우 그 차입금의 총액은 차입 당시 이 투자신탁자산 총액에서 부채총액을 뺀 가액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③ 제1항에 따른 금전차입의 방법, 차입금 상환 전 투자대상자산의 취득 제한 등은 법시행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야 한다.
- ④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재산 중 금전을 대여(제15조의 단기대출을 제외한다)하여서는 아니된다.
- ⑤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재산을 운용함에 있어서 투자신탁재산으로 이 투자신탁 외의 자를 위하여

채무보증 또는 담보제공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48조 (공시 및 보고서 등)

- ① 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가 수익자에 대하여 일간신문에 공고를 하는 때에는 [매일경제신문](#)에 공고하되, 2개 이상의 일간신문에 공고하는 때에는 [한국경제신문](#)에도 공고한다.
- ② 집합투자업자는 이 투자신탁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모투자신탁의 경우를 포함한다)을 그 사유발생 후 지체없이 제3항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공시하여야 한다.
 1. 투자운용인력의 변경이 있는 경우 그 사실과 변경된 투자운용인력의 운용경력(운용한 집합투자기구의 명칭, 집합투자재산의 규모와 수익률을 말한다)
 2. 환매연기 또는 환매재개의 결정 및 그 사유(법 제230조에 따른 환매금지형집합투자기구의 만기를 변경하거나 만기상환을 거부하는 결정 및 그 사유를 포함한다)
 3. 법 시행령 제93조제2항이 정하는 부실자산이 발생한 경우 그 내역 및 상각율
 4. 수익자총회의 의결내용
 5. 그 밖에 투자자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법 시행령 제93조 제3항에서 정하는 다음 각 목의 사항
 - 가. 투자설명서의 변경 (다만, 법 및 금융위원회의 명령에 따라 변경하는 경우, 집합투자규약의 변경에 따라 변경하는 경우, 단순한 자구수정, 투자운용인력의 변경이 있는 경우로서 법 제123조제3항제2호에 따라 투자설명서를 변경하는 경우 등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나. 집합투자업자의 합병, 분할, 분할합병 또는 영업의 양도·양수
 - 다. 집합투자업자 또는 일반사무관리회사가 기준가격을 잘못 산정하여 이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 ([법 시행령 제262조제1항 후단에 따라 공고·게시한 경우에 한한다](#))
 - 라. 사모집합투자기구가 아닌 집합투자기구(존속하는 동안 투자금을 추가로 모집할 수 있는 집합투자기구로 한정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로서 설정 및 설립 이후 1년이 되는 날에 원본액이 50억원 미만인 경우 그 사실과 해당 집합투자기구가 법 제192조제1항 단서에 따라 해지될 수 있다는 사실
 - 마. 사모집합투자기구가 아닌 집합투자기구가 설정 및 설립되고 1년이 지난 후 1개월간 계속하여 원본액이 50억원 미만인 경우 그 사실과 해당 집합투자기구가 법 제192조제1항 단서에 따라 해지될 수 있다는 사실
 - 바. 부동산집합투자기구 또는 특별자산집합투자기구(부동산·특별자산투자재간접집합투자기구를 포함한다)인 경우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
 - 1) 법 시행령 제24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시장성 없는 자산의 취득 또는 처분
 - 2) 부동산집합투자기구 또는 특별자산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의 취득 또는 처분. 다만, 이미 취득한 것과 같은 집합투자증권을 추가로 취득하거나 일부를 처분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3) 지상권·지역권 등 부동산 관련 권리 및 사업수익권·시설관리운영권 등 특별자산 관련 중요한 권리의 발생·변경
 - 4) 금전의 차입 또는 금전의 대여
 - 사. 그 밖에 투자자의 투자판단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 ③ 제2항에 따른 수시공시는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모두 공시하여야 한다.

1. 집합투자업자, 수익증권을 판매한 판매회사 및 한국금융투자협회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공시하는 방법
2. 수익증권을 판매한 판매회사로 하여금 전자우편을 이용하여 수익자에게 알리는 방법
3. 집합투자업자, 수익증권을 판매한 판매회사의 본점과 지점, 그 밖의 영업소에 게시하는 방법
- ④ 집합투자업자는 법 제119조에 의하여 공모의 방법으로 수익증권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법령에 따라 증권신고서, 정정신고서, 투자설명서 및 발행실적보고서 등을 금융위원회를 통해 공시하여야 하며, 투자설명서의 경우 법 제123조의 규정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제출하고 총리령으로 정하는 장소(법 시행규칙 제13조 제1항 각 호의 장소)에 비치하고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⑤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의 최초 설정일부터 매3개월마다 법 제88조에서 규정한 자산운용보고서(모투자신탁의 경우를 포함한다)를 작성하여 수익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투자자가 수시로 변동되는 등 투자자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수익자가 자산운용보고서의 수령을 거부한다는 의사를 서면, 전화·전신·팩스, 전자우편 또는 이와 비슷한 전자통신의 방법으로 표시한 경우
 2. 수익자가 보유하고 있는 수익증권의 평가금액이 10만원 이하인 경우
- ⑥ 신탁업자는 투자신탁의 회계기간 종료 등 법 제90조제2항에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후 2월 이내에 법 제248조에서 규정한 자산보관·관리보고서(모투자신탁의 경우를 포함한다)를 작성하여 수익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투자자가 수시로 변동되는 등 투자자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법시행령 제270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 ⑦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산운용보고서를 교부하는 경우 판매회사 또는 전자등록기관을 통하여 직접, 전자우편 또는 이와 비슷한 전자통신의 방법으로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투자자가 해당 집합투자기구에 투자한 금액이 100만원 이하이거나 투자자에게 전자우편 주소가 없는 등의 경우에는 제3항 제1호의 방법에 따라 공시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으며, 투자자가 우편발송을 원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야 한다.
- ⑧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산보관·관리보고서를 교부하는 경우 판매회사 또는 전자등록기관을 통하여 직접 또는 전자우편의 방법으로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투자자에게 전자우편 주소가 없는 등의 경우에는 제3항 제1호 및 제3호의 방법에 따라 공시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으며, 투자자가 우편발송을 원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야 한다.
- ⑨ 집합투자업자는 법 제9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 투자신탁재산에 관한 매 분기의 영업보고서를 작성하여 매 분기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금융위원회 및 한국금융투자협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⑩ 집합투자업자는 법 제9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 투자신탁에 대하여 다음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법 제239조의 규정에 따른 결산서류를 금융위원회 및 한국금융투자협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이 투자신탁의 회계기간 종료
 2. 이 투자신탁의 계약기간 또는 존속기간의 종료
 3. 이 투자신탁의 해지 또는 해산

제49조 (손해배상책임)

- ① 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는 법령·신탁계약·투자설명서에 위반하는 행위를 하거나 그 업무를 소홀히 하여 수익자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② 이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업자와 신탁업자는 판매회사·일반사무관리회사·집합투자기구평가회사(법 제258조에 따른 집합투자기구평가회사를 말한다) 및 채권평가회사(법 제263조에 따른 채권평가회사를

말한다)와 함께 법에 따라 투자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 귀책사유가 있는 때에는 연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진다.

제50조 (수익증권의 통장거래)

수익자는 한국금융투자협회 및 판매회사가 제정한 "수익증권저축약관"(연금저축 종류 수익증권의 경우에는 "연금저축계좌설정약관")에 따라 통장거래 등을 할 수 있다.

제51조 (관련법령 등의 준용)

이 신탁계약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관련법령 및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2조 (관할법원)

- ① 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 또는 판매회사가 이 신탁계약에 관하여 소송을 제기한 때에는 소송을 제기하는 자의 본점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제기한다.
- ② 수익자가 소송을 제기하는 때에는 수익자의 선택에 따라 수익자의 주소지 또는 수익자가 거래하는 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 또는 판매회사의 영업점포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제기할 수 있다. 다만, 수익자가 외국환거래법 제3조제1항제15호의 규정에 의한 비거주자인 경우에는 수익자가 거래하는 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 또는 판매회사의 영업점포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제기하여야 한다.

[부 칙]

- (시행일) 이 신탁계약은 2019 년 4 월 21 일부터 시행한다.
(시행일) 이 신탁계약은 2019 년 9 월 25 일부터 시행한다.
(시행일) 이 신탁계약은 2020 년 1 월 21 일부터 시행한다.
(시행일) 이 신탁계약은 2021 년 2 월 5 일부터 시행한다.
(시행일) 이 신탁계약은 2021 년 7 월 22 일부터 시행한다.
(시행일) 이 신탁계약은 2022 년 5 월 12 일부터 시행한다.
(시행일) 이 신탁계약은 2022 년 8 월 26 일부터 시행한다.
(시행일) 이 신탁계약은 2022 년 11 월 3 일부터 시행한다.
(시행일) 이 신탁계약은 2022 년 12 월 22 일부터 시행한다.
(시행일) 이 신탁계약은 2024 년 10 월 17 일부터 시행한다.
(시행일) 이 신탁계약은 2026 년 04 월 01 일부터 시행한다.
(시행일) 이 신탁계약은 2026 년 06 월 12 일부터 시행한다.
(시행일) 이 신탁계약은 2026 년 07 월 10 일부터 시행한다.

집합투자업자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96, TP 타워 23~26 층
신한자산운용(주)
대표이사 이 석 원

신탁업자 : 서울특별시 중구 소공로 51
주식회사 우리은행
은행장 정 진 완